

#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2학년도 5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8명	0명

1. 일 시 : 2023년 02월 07일 15:0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01월 27일)

2.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회의실

###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 8 인 ) : 지홍원, 윤산영, 김학만, 윤지현, 이경재, 김주현, 이재웅, 손재규

- 감사 ( 0 인 ) :

#### ○ 불참임원

- 이사 ( 1 인 ) : 김영철

- 감사 ( 2 인 ) : 도형집,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박만성 과장

### 4. 안 건

(1)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 신규 전임교원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고. 의 2명, 총 3명 임용에 관한 사항

(2) 2023학년도 1학기 겸임교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

· 재임용 겸임교원 안경광학과 권. 의 28명, 총 29명 임용에 관한 사항

### 5. 회의내용

15:00 정각에 법인과장이 교원현황과 관련하여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사님들에게 보고한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이경재	이사	윤산영
-----	----	-----	----	-----	----	-----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6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 산하 성운대학교의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 안건은 성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준비된 회의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김주현) :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 능력을 갖추고, 공동체의 협력적 인성을 겸비한 헌신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에 시대에 맞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교원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규 임용대상자는 성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학에 필요한 인재들을 추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신임 전임교원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교: 추천자는 2급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젠더연구소 대표로 재직한 산업체 경력과 수성대학교 조교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성 추천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참빛복지센터 등 전공 분야 관련 산업체 경력과 충남도립대학교, 장안대학교, 성결대학교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권 추천자는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은가비재가복지센터 및 남포항요양보호사교육원 등 다양한 산업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임 전임교원 총 3명을 조교수로 추천하였습니다. 더불어 추천된 신규임용자들의 임용기간을 [붙임1]과 같이 임용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사(이재웅) : 성운대학교는 지속적인 변화와 창의적 혁신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전문화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이재웅	이사	유진영
-----	----	-----	----	-----	----	-----

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참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규임용을 제청하였으므로 추천된 신규교원 3명의 임용안(임용기간포함)에 대한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사(손재근) : 성운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유능한 전임교원을 심의하여 제청한 신규임용안(임용기간포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사(이경재) :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며, 대학은 대학본연의 의무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성운대학교에서 추천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안(임용기간 포함)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건(임용기간 포함)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살피며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8명 중 8명 찬성 표결함)

의장(지홍원이사장) :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18조 그리고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성운대학교 신임 전임교원 3명의 임용안(임용기간 포함)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다음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16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 산하 성운대학교의 2023학년도

간서명	이사	김규현	이사	김영	이사	유진영
-----	----	-----	----	----	----	-----

도 겸임조교수 재임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 안건은 성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준비된 회의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김학만) :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겸임조교수는 현장실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원으로 성운대학교의 2023학년도 1학기 재임용 겸임조교수 29명(안경광학과 권\_\_\_\_, 장\_\_\_\_, 전\_\_\_\_, 말산업과 박\_\_\_\_, 서\_\_\_\_, 장\_\_\_\_, 유아교육과 양\_\_\_\_,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구\_\_\_\_, 김\_\_\_\_, 김\_\_\_\_, 김\_\_\_\_, 정\_\_\_\_, 정\_\_\_\_, 박\_\_\_\_, 김\_\_\_\_, 박\_\_\_\_, 배\_\_\_\_, 이\_\_\_\_, 스마트평생융합학부 김\_\_\_\_, 장\_\_\_\_, 박\_\_\_\_, 서\_\_\_\_, 우\_\_\_\_, 이\_\_\_\_, 이\_\_\_\_,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남\_\_\_\_, 서\_\_\_\_, 스마트평생교육학부 교육복지전공 강\_\_\_\_, 스마트평생교육학부 창농융합전공 장\_\_\_\_)는 위 조건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겸임조교수 29명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더불어 추천된 겸임조교수 재임용자들의 임용기간을 [붙임2]와 같이 임용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사(윤진영) : 겸임조교수 재임용안(임용기간 포함)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이사(김주현) : 이번에 추천된 겸임조교수분들은 산업체경력과 교육경력이 우수하여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강화와 현장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겸임조교수 임용안(임용기간 포함)의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사(이재웅) : 김주현이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2023학년도 1학기 겸임조교수의 재임용(임용기간 포함)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서 의견을 기다린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이재웅	이사	윤진영
-----	----	-----	----	-----	----	-----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8명 중 8명 찬성 표결함)

의장(지홍원이사장) :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18조 그리고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성운대학교 재임용 겸임조교수 29명에 대한 임용안(임용기간 포함)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사 전원 : 예

####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윤진영이사, 김주현이사, 이재웅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는 김학만이사의 동의와 손재근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 7. 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명단

연번	소속학과	성명	직급	임용기간
1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고	조교수	2023.03.01.~2024.02.29.
2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성	조교수	2023.03.01.~2024.02.29.
3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권	조교수	2023.03.01.~2024.02.29.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이재웅	이사	윤진영
-----	----	-----	----	-----	----	-----

[붙임2]

2023학년도 1학기 겸임교원 재임용 명단

연번	구분	소속학과	성명	직급	임용기간
1	재임용	안경광학과	권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	재임용	안경광학과	장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3	재임용	안경광학과	전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4	재임용	말산업과	박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5	재임용	말산업과	서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6	재임용	말산업과	장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7	재임용	유아교육과	양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8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구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9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김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0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김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1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김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2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정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3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정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4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박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5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김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6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박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7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배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8	재임용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이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19	재임용	스마트평생융합학부	김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0	재임용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장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1	재임용	스마트평생융합학부	박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2	재임용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서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3	재임용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우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4	재임용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이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5	재임용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이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6	재임용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남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27	재임용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서	겸임조교수	2023.03.01.~2024.02.29.

간서명	이	김주현	이	김민영	이	윤진영
	사		사		사	

28	재임용	스마트평생교육학부 교육복지전공	장	겸임조교수	2023.03.01. ~ 2024.02.29.
29	재임용	스마트평생교육학부 창농융합전공	장	겸임조교수	2023.03.01. ~ 2024.02.29.

2023년 02월 07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홍원 (인)

이사

윤진영

윤진영

이사

김학만

김학만 (인)

이사

윤지현

윤지현 (인)

이사

이경재

이경재

이사

이재웅

이재웅

이사

김주현

김주현

이사

손재근

손재근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이재웅	이사	윤진영
-----	----	-----	----	-----	----	-----

#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2학년도 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8명	0명

1. 일 시 : 2023년 02월 07일 15:2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01월 27일)

2.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 8 인 ) : 지홍원, 윤진영, 김학만, 윤지현, 이경재, 김주현, 이재웅, 손재근

- 감사 ( 0 인 ) :

○ 불참임원

- 이사 ( 1 인 ) : 김영철

- 감사 ( 2 인 ) : 도형집,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박만성 과장

4. 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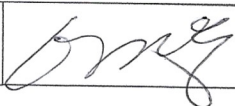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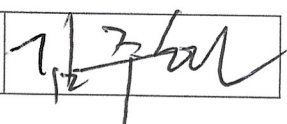
(1) 2022회계연도 성운대학교 교비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 성운대학교 2022회계연도 총세입·세출 15,340,75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5. 회의내용

15:20분에 법인과장이 2022회계연도 성운대학교 추가경정예산 회의자료를 보고한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간서명	이 사		이 사	윤진영	이 사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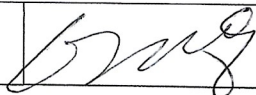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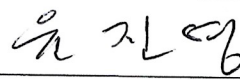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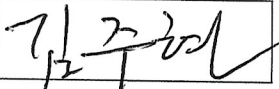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오늘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16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2회계연도 성운대학교의 교비 3차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안건입니다. 회의자료를 검토하시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김주현) : 성운대학교 교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수입부분에서 등록금 수입은 7,460,221,000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613,39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입 및 기부수입은 6,854,859,000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59,90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부대 수입은 48,050,000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며, 교육외 수입은 105,525,000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3,650,000원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와 기타 자산 수입은 2,000,000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650,000,000원 감액되었으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870,099,000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총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409,645,000원이 감액되어 15,340,75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보수가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80,397,000원이 감액되어 3,601,066,000원입니다. 관리운영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25,838,000원이 감액되어 2,173,424,000원이며, 연구학생경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526,958,000원이 감액되어 7,114,795,000원입니다. 교육외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6,885,000원이 감액되어 27,906,000원입니다. 예비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5,000,000원이 감액되어 15,000,000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은 2차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310,000,000원이고, 고정자산매입지출은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57,830,000원이 감액되어 1,414,996,000원입니다.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13,263,000원이 증액되어 683,567,000원입니다. 총지출은 차기이월자금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감소로 보수와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예비비, 고정자산매입지출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사(손재근) : 회의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2022회계연도 성운대학교의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찬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	---

성합니다.

이사(이재웅) :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은 예산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대학발전계획에 적절하게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손재근이사님의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사(윤진영) : 2022회계연도 성운대학교의 교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웅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2022회계연도 성운대학교의 교비 3차 추가경정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 및 그리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하시거나 하시려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피며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8명 중 8명 찬성 표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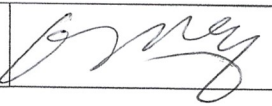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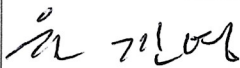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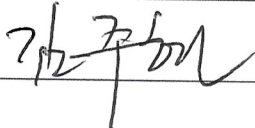
의장(지홍원이사장) : 무기명 투표 결과 저를 포함한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18조 그리고 학교 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2회계연도 성운대학교 교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세입·세출금액을 15,340,754,000원으로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사전원 : 예

##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윤진영이사, 김주현이사, 이재웅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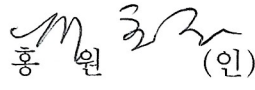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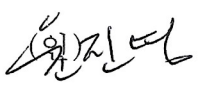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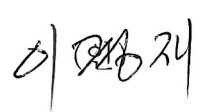



간서명	이 사		이 사		이 사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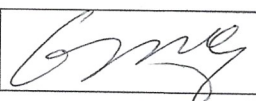
자는 김학만이사의 동의와 손재근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7. 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02월 07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홍 원  (인)
	이 사	윤	진 영 
	이 사	김	학 만 
	이 사	윤	지 현 
	이 사	이	경 재 
	이 사	이	재 응  (인)
	이 사	김	주 현 
	이 사	손	재 근  (인)

간서명	이		이	윤	진	이	김	주	현
	사		사	영	만	사	재	응	현

#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2학년도 5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8명	0명

1. 일 시 : 2023년 02월 07일 15:4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01월 27일)

2.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 8 인 ) : 지홍원, 손재근, 유진영, 김학만, 윤지현, 이경재, 김주현, 이재응

- 감사 ( 0 인 ) :

○ 불참임원

- 이사 ( 1 인 ) : 김영철

- 감사 ( 2 인 ) : 도형집,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박만성 과장, 성운대학교 기획처 임나현 과장

4. 안 건

(1) 2023회계연도 성운대학교 예산에 관한 사항

· 성운대학교 2023회계연도 총세입·세출 17,070,949,000원의 예산에 관한 사항

5. 회의내용

15:40에 법인과장이 2023회계연도 성운대학교 예산과 관련한 회의자료를 보고한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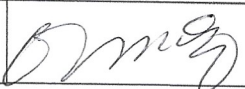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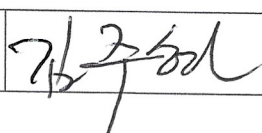
간서명	이사	유진영	이사	유진영	이사	김주현
-----	----	-----	----	-----	----	-----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오늘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16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3회계연도 성운대학교의 예산에 관한 안건입니다. 회의자료를 검토하시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이재웅) : 2023회계연도 예산의 총 수입과 세출금액은 17,070,949,000원으로 이중 수입은 등록금 수입이 7,944,23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460,221,000원에서 484,01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 6,854,859,000원에서 204,791,000원이 증액되어 7,059,650,000원입니다. 교육부대수입은 92,500,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450,000원 증액되었으며, 교육외 수입은 24,000,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525,000원보다 81,52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은 1,267,000,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00,000원 보다 1,265,0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없으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683,56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6,532,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보수가 4,341,47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01,066,000원보다 740,40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리운영비는 2,404,53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73,424,000원보다 231,11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 학생 경비는 7,297,620,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2,82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외 비용은 24,000,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0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000,000원이 증액되어 25,000,000원입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은 560,29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0,29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정자산매입지출은 1,791,39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6,40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차기이월자금은 56,940,000원이 감액되어 626,627,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수입에서 교육외 수입과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이 감소하고 등록금 수입 및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 수입과 투자와 기타자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은 교육외 비용과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와 관리운영비, 연구 학생경비, 예비비, 투자와 기타 자산,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간서명	이사		이사	윤진영	이사	
-----	----	---	----	-----	----	---

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사(이경재)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이재웅 이사님의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사(김학만) : 2023회계연도 성운대학교의 예산안에 대하여 이경재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2023회계연도 성운대학교 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 및 그리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하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피며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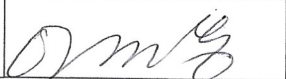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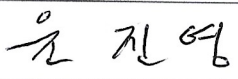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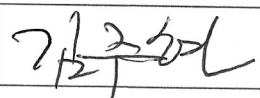
(참석 이사 8명 중 8명 찬성 표결함)

의장(지홍원이사장) : 무기명 투표 결과 저를 포함한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18조 그리고 학교 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회계연도 성운대학교 예산안 총 세입·세출금액을 17,070,949,000원으로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 폐회를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사전원 : 예

##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윤진영이사, 김주현이사, 이재웅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

간서명	이 사		이 사		이 사	
-----	--------	---	--------	--	--------	---

자는 김학만이사의 동의와 손재근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7. 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02월 07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홍원 (인)

이 사 윤진영 (인)

이 사 김학만 (인)

이 사 윤지현 (인)

이 사 이경재 (인)

이 사 이재웅 (인)

이 사 김주현 (인)

이 사 손재근 (인)

간서명	이 사	이재웅	이 사	윤진영	이 사	김주현
-----	--------	-----	--------	-----	--------	-----

# 학교법인 예운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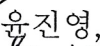



2022학년도 5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8명	0명

1. 일 시 : 2023년 02월 07일 16:0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01월 27일)

2.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 8 인 ) : 지홍원,  윤진영,  김학만,  이경재,  김추현, 이재웅

- 감사 ( 0 인 ) :  손재균

○ 불참임원

- 이사 ( 1 인 ) : 김영철

- 감사 ( 2 인 ) : 도형집,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박만성 과장

4. 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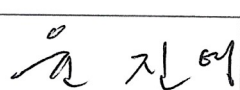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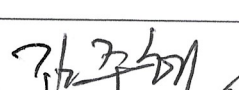
- 정관변경 안

5. 회의내용

16:00분에 법인과장이 금일 이사회의 안건에 관련하여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사님들에게 보고한다.

의장(지홍원 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 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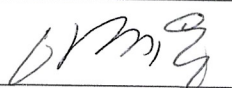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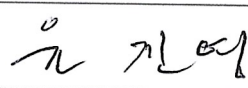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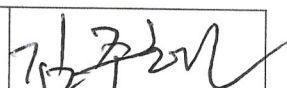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번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45조 및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00조(정관변경)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손재근) :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학생과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20조의 4 (평의원회의 구성) 제1항의 제1호 교원 4인, 제3호 학생 2인을 제1호 교원 3인, 제3호 학생 3인”으로 개정, “제43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1항에서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제4호 강사, 비전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4호 겸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개정하고 제5조 조교 :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를 삭제, 제3항 학교의 장과 제2항의 교원 이외의 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 사 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를 학교의 장과 제2항의 교원 이외의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하되, 정년의 연장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하되,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정년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9인으로 개정, 제2항 제4호 특정 성(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3조(하부조직) 제1항에서 대학성과관리본부를 교육혁신본부로 개정하고 산학협력처 삭제, 제3항 대학성과관리본부장을 교육혁신본부장으로 개정하고 산학협력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삭제, 제4항 산학협력처,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를 하부조직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하고, “제95조(학술정보센터) 제2항 학술정보센터에는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원으로 보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 학술정보센터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학술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 및 “제95조의 2(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을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	---

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

③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④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김학만) :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의 4(평의원회의 구성) 제1호, 제3호 개정과 제43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1항 개정, 제2항 제4호 개정 및 제5호 삭제, 제3항 개정, 제64조(정년) 개정,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항 개정, 제2항 제4호 신설, 제93조(하부조직) 제1, 3, 4항 개정과 제95조 제2항 삭제, 제3항 개정 그리고 제95조의 2(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신설에 관한 원안에 찬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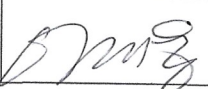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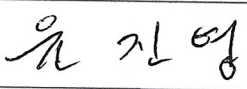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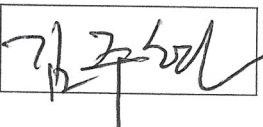
이사(이경재) : 김학만이사의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사(이재웅) : 이경재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의 4(평의원회의 구성) 제1호, 제3호 개정과 제43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1항 개정, 제2항 제4호 개정 및 제5호 삭제, 제3항 개정, 제64조(정년) 개정,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항 개정, 제2항 제4호 신설, 제93조(하부조직) 제1, 3, 4항 개정과 제95조 제2항 삭제, 제3항 개정 그리고 제95조의 2(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신설에 관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서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	---

(참석 이사 8명 중 8명 찬성 표결함)

의장(지홍원이사장) : 예, 저를 포함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학교법인 예운학  
원 정관 제20조의 4(평의원회의 구성) 제1호, 제3호 개정과 제43  
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1항 개정, 제2항 제4호 개정  
및 제5호 삭제, 제3항 개정, 제64조(정년) 개정, 제68조(징계위원  
회의 구성) 제1항 개정, 제2항 제4호 신설, 제93조(하부조직) 제1,  
3, 4항 개정과 제95조 제2항 삭제, 제3항 개정 그리고 제95조의  
2(산학협협력단 및 학교기업) 신설에 관하여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  
의 폐회를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6. 간서명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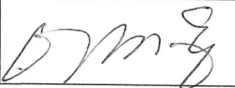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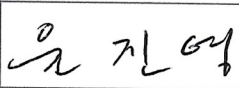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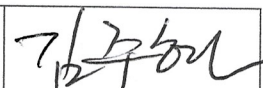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윤진영이사, 김주현이사, 이재웅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  
자는 김학만이사의 동의와 손재근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7.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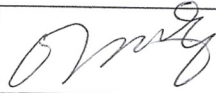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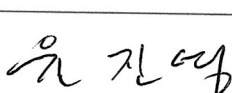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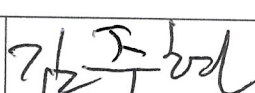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 4(평의원회의 구성)①생략	1. 교원 <b>4인</b> 2. 직원 3인 3. 학생 <b>2인</b> 4.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20조의 4(평의원회의 구성)①생략	1. 교원 <b>3인</b> 2. 직원 3인 3. 학생 <b>3인</b> 4.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43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학교 의 장 이외의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b>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 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b>		제43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학 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b>&lt;삭제&g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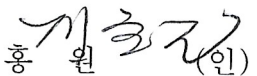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	---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u>강사, 비전임교원</u>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5. <u>조교</u> :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p> <p>③학교의 장과 제2항의 교원 이외의 <u>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u></p> <p>④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겸임교원</u>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5. <u>&lt;삭제&gt;</u></p> <p>③학교의 장과 제2항의 교원 이외의 <u>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하되, <u>정년의 연장에</u>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p>	<p>제6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하되, <u>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정년</u>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p>
<p>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u>5인</u>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p>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u>9인</u>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u>&lt;신설&gt;</u></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특정 성(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p>
<p>제93조(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u>대학성과관리</u> <u>본부</u>, 기획처, <u>산학협력처</u>,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 입시지원처, 국제혁신교류처, 행정지원처,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국제어학원 등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총장 직속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p> <p>③<u>대학성과관리본부장</u>, 기획처장, <u>산학협력처장</u>, 학사지원처장, 학생지원처장, 입시지원처장, 국제혁신교류처장, 행정지원처장, <u>산학</u></p>	<p>제93조(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u>교육혁신본</u> <u>부</u>, 기획처,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 입시지원처, 국제혁신교류처, 행정지원처,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국제어학원 등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총장 직속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p> <p>③<u>교육혁신본부장</u>, 기획처장, 학사지원처장, 학생지원처장, 입시지원처장, 국제혁신교류처장, 행정지원처장, 부속·부설기관장, 총장</p>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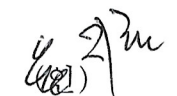
<p><u>협력단장</u>, 부속·부설기관장, 총장 직속기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p> <p>④<u>산학협력처,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u>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p>	<p>직속기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p> <p>④<u>하부조직</u>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p>
<p>제95조(학술정보센터) ①(생략)</p> <p>②<u>학술정보센터에는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원으로 보한다.</u></p> <p>③학술정보센터의 <u>분장업무</u>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5조(학술정보센터) ①(현행과 같음)</p> <p>②&lt;삭제&gt;</p> <p>③학술정보센터의 <u>운영에 관한 사항</u>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제95조의 2(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u>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u></p> <p>②<u>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u></p> <p>③<u>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u></p> <p>④<u>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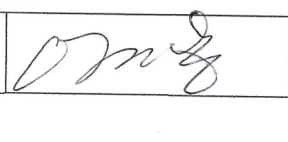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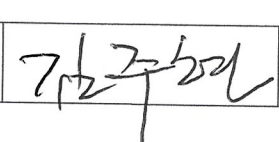
2023년 02월 07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홍  (인)

이 사 윤 진 영  (인)

이 사 김 학 만  (인)

이 사 윤 지 현  (인)

간서명	이 사		이 사	윤진영	이 사	
-----	-----	---	-----	-----	-----	---

이 사 이 경 재 이경재  
 이 사 김 주 현 김주현  
 이 사 이 재 응 이재응  
 이 사 손 재 근 손재근

간서명	이 사	이재응	이 사	유지영	이 사	김주현
-----	--------	-----	--------	-----	--------	-----